

대 외 비 (사외비)

----- 목 차 -----

제 1조	목적
제 2조	적용범위
제 3조	권한
제 4조	구성
제 5조	의장
제 6조	회의의 종류
제 7조	소집권자
제 8조	성립 및 결의
제 9조	의결사항
제10조	권한의 위임
제11조	긴급사항
제12조	이사의 의무
제13조	이사의 책임
제14조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제15조	부의절차
제16조	제안 및 의사진행
제17조	의사록의 작성
제18조	간사
제19조	부록

이사회운영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주식회사 이사회(이하 “이사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법령 또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조 권한

1.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2.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3. 이사회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 4조 구성

1. 이사회는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 5조 의장

1. 이사의회의 의장은 이사의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2. 의장이 이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또는 사전에 이사의회에서 정한 순서에 의거 직무를 대행한다.

제 6조 회의의 종류

1. 이사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 정기회의는 매 분기 1회 실시한다.
3. 임시회의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제 7조 소집권자

1.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하며, 이사의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소집할 수 있다.
2. 대표이사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소집에 관한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회는 최소 3일 이전에 각 이사에게 통보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8조 성립 및 결의

1.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사업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2 이상의 수로 한다.
2.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당해 안건에 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사는 출석이사의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 9조 의결사항

1.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하며, 본 조에서 적용되는 자기자본 및 자산총액은 최근 사업연도 말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 1.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부의할 사항
 - 영업보고서의 승인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분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의 승인
 -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사항
 - 1.2. 경영에 관한 사항
 - 경영방침 또는 중장기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연간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대표이사 및 임원 선임에 관한 제반사항
 -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운영 및 폐지/ 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 중요한 조직·기구의 제정 및 개편에 관한 사항
 -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기타 경영상 중요한 계약에 관한 사항
 - 1.3. 재무에 관한 사항
 - 자기자본 5% 이상의 출자 또는 출자지분 처분에 관한 사항
 - 자산총액 5% 이상의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 자기자본 5% 이상에 상당하는 신규사업 추진 및 중요한 투자·출자에 관한 사항
- 자기자본 5% 이상의 신용공여 : 채무인수, 연대보증, 담보제공, 대여 등 (단, 건설사업 추진/ 시공관련 신용공여는 경영위원회 승인)
- 자기자본 5% 이상의 지출을 수반하는 계약의 체결행위. 단, 공사도급계약 등에 수반되는 하도급 및 물품구매계약 등은 제외한다.
- 자기자본 10% 이상의 자금 차입
- 공모사채의 발행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발행
- 연간, 반기 및 분기 결산실적 승인에 관한 사항

1.4. 기타

- 청구 금액이 자기자본 5% 이상인 소송의 제기행위 및 이의 합의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 또는 정관, 주주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회사운영과 관련하여 각 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 부의 하는 사항

2. 이사회에 다음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2.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 2.2.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

제10조 권한의 위임

1.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대표이사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위원회의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는 각 위원회의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긴급사항

1.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거 긴급 조치한 사항은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이사의 의무

1. 이사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경영정보에 대한 회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영정보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사 본인에게 있다.

제13조 이사의 책임

1. 이사는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책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2.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이사의 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동일한 책임을 진다.
3.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1.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제 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부의절차

1. 의안을 부의하고자 하는 부서는 부의안건의 상세내용을 이사회 간사를 통하여 이사회 7일전까지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이사회 간사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 소집통지와 상정의안의 개요를 회의일 3영업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제안 및 의사진행

1. 이사회 의안은 대표이사 또는 각 이사가 발의한다.
2. 대표이사 이외의 이사가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대표이사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3. 회의에 부의할 의안의 제안설명은 당해 의안의 발의 이사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관계 직원이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의사록의 작성

1. 이사회 간사는 의사의 경과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한다.
2. 출석한 이사의 기명날인을 득하여 그 원본을 본점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 간사

1.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
2. 간사는 경영관리담당 본부장이 되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사무를 담당한다.

제19조 부록

1. 시행일

- 이 규정은 1994년 9월 2일부터 제정 · 시행한다.
- 이 규정은 1998년 7월 22일부터 개정 · 시행한다.
- 이 규정은 1998년 10월 20일부터 개정 ·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02년 3월 6일부터 개정 ·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개정 ·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8년 2월 8일부터 개정 ·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9년 4월 26일부터 개정 ·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개정 ·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23년 3월 2일부터 개정 · 시행한다.